



금화PSC 인권경영정책

1. 목적

본 인권경영 기본정책은 (주)금화PSC(이하 "회사")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규범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회사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UN, ILO 등 국제기구의 인권·노동 기준을 지지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정의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
2. "구성원"이란 회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 거래처, 고객, 주주, 구성원, 지역사회 등의 모든 법인 및 개인을 말한다.
4. "인권경영"이란 회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인권경영 선언을 하고, 실천점검 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본원칙

- 아동노동 금지

법적 최소 근로 연령이 미달하는 아동의 고용을 금지하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시 안전 보건 상 위험/유해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아동노동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강제노동 금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허용하지 않으며,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기준을 준수하여 구성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더불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 차별 금지

임직원의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종교, 장애, 출신지역, 정치적 성향 등에 관계없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인도적 대우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정신적·육체적 강압, 학대, 협박이나 감금 등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한다.

- 근로조건 준수

회사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해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가별 법규를 준수한다. 또한,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며, 초과근무에 대하여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 노동자의 권리 보장

회사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롭게 노동조합의 결성이 허용되며,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산업·안전보건 보장

회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며, 사업장의 시설과 장비 도구 등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더불어 회사는 업무 상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 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지역주민 인권 보호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지적재산권, 거주 자유를 보호한다.

- 신고제도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인권규정의 위반사례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금화피에스시 신문고' 채널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더불어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참고자료**

국내·외 인권표준 및 관련 법규에서 명시하는 인권 관련 조항, 표준 및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본 인권정책을 제정하였다.

- ①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② UN,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③ ILO, Declaration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